

경영위원회 규정



주식회사 티와이엠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의2 및 이사회규정 제11조에 의한 경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권한) 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일상 경영사항에 관하여 심의·의결한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3조 (구성) 위원회는 상근이사(사외이사 기타 비상근이사 제외)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4조 (위원장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 회장으로 한다.

② 대표이사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규정 제5조 제2항에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 (종류)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매월 세번째 월요일에 개최한다. 이 경우 필요시 위원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③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6조 (소집권자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규정 제5조 제2항에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위원회의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소집권자인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위원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 (소집절차)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회일 1일전에 각 위원 및 감사에게 서면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 및 감사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8조 (결의방법)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9조 (감사의 출석)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10조 (관계인의 의견 청취)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1조 (부의사항)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이사회 결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한다.

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이라 함은 이사회규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부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.

1.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- (2)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
- (3)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
- (4)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5)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
- (6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(7)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
- (8) 급여체계, 상여 및 후생제도
- (9)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
- (10)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
- (11) 중요한 사규, 사칙의 규정 및 개폐
- (12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
2. 재무에 관한 사항

- (1) 투자에 관한 사항
- (2) 중요한 계약의 체결
- (3)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
- (4)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
- (5)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
- (6)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의 설정

3. 기타

- (1) 중요한 소송의 제기
- (2) 기타 경영 일반에 관한 사항

제12조 (이사회와의 관계)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는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제13조 (통지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4조 (의사록)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③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위원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원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제15조 (간사)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회계팀장 또는 재무팀장이 되며,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16조 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